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 기간 : 본 계약의 기간은 1년이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다.
2. 급여 범위 : 방문 요양 급여는 장기 요양 요원이 수급자(갑)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, 정서지원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.
3. 급여 이용 및 제공 :
 - 1) 급여 이용 및 제공은 금호방문요양센터(을)가 수급자(갑)(또는 보호자(병))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일정표에 의한다.
 - 2) 1일 2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.
 - 3) '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'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'을'은 50%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급휴일(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)은 50%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. 다만 야간/심야/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.
 - 4) '을'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'갑' (또는 '병')과 합의하여 서비스일정표를 작성하여 익월 1일 이전까지 '갑'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일정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.
 - 5) '갑'의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 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 시작 최소 1시간 전에 '을'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.
4. 계약자의 의무 :
 - 1) '갑'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- ① 월 이용료 납부 및 급여 범위 내 급여 이용
 - ②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및 기타 '을'과 협의한 규칙 이행
 - 2) '을'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- ① 급여 제공 계약 내용 준수 및 이용 상담,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
 - ② 급여제공 중 '갑'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'병'에게 통보
 - ③ 급여제공시간에 '갑'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
 -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'갑'의 신상 및 질환에 관한 비밀 유지
(단,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)
 - ⑤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및 기타 '갑' (또는 '병')의 요청에 협조
 - 3) '병'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- ① '갑'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및 '갑'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
 - ②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'을'에게 통보
 - ③ '갑'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'을'에게 통보
 - ④ 기타 '을'의 협조 요청 이행

5. 계약 해지 요건 :

- 1)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을’ 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 -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 - ②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- ③ 급여 제공 시간을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의 동의없이 ‘을’ 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
 - ④ 기타 ‘갑’ 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2) ‘을’ 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갑’ (또는 ‘병’)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 -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/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 - ② ‘갑’ 의 건강진단 결과 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’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 - ③ ‘갑’ 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 - ④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‘갑’ 이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 - ⑤ ‘갑’ 이 월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
6. 이용료 납부 :

- 1)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.

- ①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구분	수 가 (단위 : 원 / 회당)								
방문 요양	30분	60분	90분	120분	150분	180분	210분	240분	270분이상
	16,190	23,480	31,650	40,280	46,970	52,880	58,930	65,000	시간에 따라결정

구분	수 가 (단위 : 원 / 회당)		
방문 목욕	목욕차량 이용 (차량내 목욕)	목욕차량 이용 (가정내 목욕)	목욕차량 미이용시
	82,160	74,070	46,250

- ②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월)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재가급여 월한도액	1,885,000	1,690,000	1,417,200	1,306,200	1,121,100	624,600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.

③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

구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(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6% 또는 9%

7. 재계약 :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.

- 1)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- 2)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
- 3)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
- 4) 기타 ‘갑’ 과 ‘을’ 이 필요한 경우

8. 건강관리 :

- 1) ‘을’ 은 ‘갑’ 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2) ‘을’ 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제공 도중 ‘갑’ 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9. 위급시 조치 :

- 1) ‘을’ 은 급여 제공시간에 ‘갑’ 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 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‘병’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2) ‘병’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처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3) ‘갑’ 이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‘을’ 은 즉시 ‘병’ 에게 통보한다.

10. 개인정보 보호의무 :

- 1) ‘갑’ 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2) ‘을’ 은 ‘갑’ 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- 3) ‘을’ 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‘갑’ 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의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주체 등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
- 4) ‘을’ 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‘갑’ 에게 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 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
- 5) ‘을’ 은 ‘갑’ 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

11. 기록 및 공개 : ‘을’은 ‘갑’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,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 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

12. 배상책임 :

1) ‘을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.

① 장기요양요원(또는 ‘을’)의 고의나 과실에 인하여 ‘갑’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
② 장기요양요원(또는 ‘을’)의 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 39조의 9에 있는 금지행위를 말한다)로 인하여 ‘갑’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,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
2)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은 ‘을’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
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

② ‘을’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
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
④ ‘갑’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금호방문요양센터

 054-338-9633